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참 고 자 료	보다나은 정부

2019년 9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26(목) 11:00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9. 26(목)	담당부서	유통물류과
담당과장	김호성 과장(044-203-4380)	담 당 자	조은형 사무관(044-203-4381)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 상권영향평가 범위 1개 업종 → 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으로 확대 -
-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9.27일 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27(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되어 상권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규모점포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12.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9.2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권영향평가 강화 (12월 시행)

- 분석범위 확대 :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석방법 세분화 : 기존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하여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분석기법(정성·정량) 및 항목(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확대 (12월 시행)

-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인씩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지역내 유통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특히, 금번에 상권영향평가 분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인**으로 확대)하여 **협의회의 대표성 및 유통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하였다.

·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③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즉시 시행)

- 「유통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도 개설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동안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어 왔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④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의무자 (즉시 시행)

-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붙 임】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조은형 사무관(☎ 044-203-4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상권영향평가 작성범위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

	< 현 행 >	< 개 정 안 >
작성 범위 (대상업종)	1개 업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기존 1개 업종 + 입점 예정 주요 업종 (외식업, 전문소매업(의류·가전 등) 포함)
작성 방법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	정량적·정성적 방법 병행 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의 변화 분석 영업개시 전후 3년간을 비교 분석

- **(작성범위)** 분석 대상 업종의 범위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등)" 및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하여 기존 대비 확대

* 총 매장면적의 10% 이상 또는 1,00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

- **(작성방법)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상권 전체 및 업종별**로 **점포수·매출·고용 등을 분석**하도록 개선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구성원을 확대**(각 2명→3명)하여 **대표성** 및 **협의 기능 강화**

< 현 행 >		< 개 정 안 >
총 **9명** (공무원 2, 대형 2, 중소 2, 협력/납품업체·전문가·소비자/주민 중 3)	▷	총 **11명** (공무원 2, 대형 3, 중소 3, 협력/납품업체·전문가·소비자/주민 중 3)

- 불법 상생기금을 수수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개선**

③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개설계획 예고** 및 **변경등록** 관련 **제도 정비**

* **(개설계획 예고)** 개설예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예고하도록 절차 신설
(변경등록) 대규모점포 개설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 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변경등록과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문구 수정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1. 요약문	가. 상권의 특성 나. 상권의 경쟁 상황 다. 상권 및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영향 기술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2. 사업의 개요	가. 개설자 나. 개설지역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예정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마. 매장면적(㎡) 바. 예상 주요 입점업종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에서 선택 • 바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1) 대규모점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의 중분류(2자리 단위)에 속하는 세분류(4자리 단위)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이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작성. 다만, 대형 종합소매업(4711)이 작성 대상인 경우에는 그 대형 종합소매업을 구성하는 세분류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이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작성 ·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음식점 및 주점업(5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2)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47121)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으로 작성
3.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3km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500m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300m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표시 • 나목의 지도에 다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표시
4. 상권의 특성	가. 입지지역의 특징 나. 주거인구수 다. 주거인구 소득분포 라. 유동인구 마. 인구 전출입 바. 상권 내 교통시설 사. 상권 내 집객시설 아. 종합적 분석	• 가목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교외지역, 신도시, 역세권으로 구분하여 작성 •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마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바목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철도역 개수 등을 작성 • 사목은 주요 관광·여가·오락, 교통·운송, 생활·개인서비스, 소매·유통, 숙박, 스포츠 시설 개수·현황 등을 작성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가. 동일·경쟁업종 현황 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 다.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상점가 현황 라. 상권 내 경쟁 현황	• 가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 대규모점포인 경우, · (동일업종) 상권 내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예상 주요 입점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단위)가 동일한 업종 현황 · (경쟁업종*)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현황 * 동일업종에 이미 포함된 경우 생략 – 준대규모점포인 경우, · 상권 내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현황 • 나목은 상권 내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포는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른 6

		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하고,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업태의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 비교 • 다목은 상권 내 시장 및 상점가별 점포수, 주요 영업 업종,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고, 해당 대규모점포등과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을 비교 •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권 내 기존 사업자간 경쟁상황을 기술하고, 위치도 또는 지형도에 표시
6. 상권영향 기술서	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범위 (2) 분석항목 (3) 분석방법 및 분석과정 (4) 예측결과 (5) 평가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사항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상권 전체 및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에 미칠 영향을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2)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의 전반적인 변화(점포수, 매출액, 유동인구, 업종 및 영업형태, 임대료),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의 변화(점포수, 매출액)를 분석항목으로 하여 작성 • (3)은 다음의 정량적(定量的) 방법과 정성적(定性的) 방법 중 각각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병행하고, 선택한 분석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분석과정(유사상권 선정 이유, 자료 출처, 설문조사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만,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로서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석방법만을 활용할 수 있음. – (정량적 방법) 다른 지역 유사상권 사례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문조사, 그 밖의 조사방법 – (정성적 방법)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문조사(주관식 설문), 그 밖의 조사방법 • (4)는 (1)의 분석범위 내에서 (2)의 항목에 대해 (3)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된 결과를 각 항목별로 또는 연관 항목 간에 연계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표나 그림 등을 첨부하여 알기 쉽게 기술 • (5)는 (4)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해 초래되는 상권의 구성상 변화(창업·폐업 등) 및 기존 사업자의 사업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나.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범위 (2) 분석항목 (3) 분석방법 (4) 예측결과 (5) 평가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사항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상권 내 고용의 변화를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2)는 다음의 2개 항목을 분석항목으로 하여 작성. 다만,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로서 상권 내 동일·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만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됨. –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및 지역주민으로 구분)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따른 상권 내 동일·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 • (3)은 산업연관분석(상권 매출액 증감률 및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다른 지역 유사상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변화 분석 • (4)는 예측된 내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술 • (5)는 (4)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 11명 ----------.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1.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 -- 3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④ ----------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3. (생 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2. 법 제12조의2---------- ----------

관한 사항	--------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 ---------- -- 지정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 ---------- ---------- ----------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
사. 상권영향기술서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④---------- ---------- ---------- -------.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점포의 소재지·상호
⑤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 경우에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	⑥----------

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갖추어 두고 ---------- ---- 기록·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 ---------- 법 제8조의3--- ----------

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② (생 략)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	③----------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

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삭 제>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삭 제>
3. 업태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 ------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 ------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 주민등록표 초본의 ---------- 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 ---------- 서류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판매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판매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통관리사자격증---------- 유통관리사자격증---------- 유통관리사자격증- ---------- 1장을 ---------- 제출해야 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5년---------- 5년----------.
1. 제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계획의 게재내용, 신청 후 게재기한: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2. ----------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2019년 1월 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 통보기한 및 지정서 반납의무: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삭 제>